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발·편성에 관한 지원 요청〉

■ 박준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65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	1
III. 검토의견	2
1. 개 관	2
2.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발·편성에 관한 지원 요청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준태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9. 25.
3. 회 부 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III. 검토의견

1. 개 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생략) <u><신 설></u>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

나. 소년원의 기능과 운영

- 소년원은 「소년법」에 따라 위탁·송치된 소년 등을 수용하고 교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기관으로(제2조제1항), 「소년법」상의 임시처분이나 보호처분 등에 따라 위탁·송치된 소년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유치된 소년 등을 수용 대상으로 함(제1조의2).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위탁소년”이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留置)된 소년을 말한다.
4. “보호소년등”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한다.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년원에서는 위탁·송치된 소년에 대하여 교정교육으로서 초·중등 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며(제28조), 시설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율을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도 부과할 수 있음(제14조의4 등).

제14조의4(규율 위반 행위)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4.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소지·사용·수수(授受)·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제15조(징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훈계
2. 원내 봉사활동
3. 서면 사과
4.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5.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6.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 ② ~ ⑨ (생략)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동법상의 보호소년등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므로,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의 대상인데, 「소년법」 등에 따라 수년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음.¹⁾ 따라서 소년원에서도 보호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29조).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소년원학교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교육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제29조의2).

제29조의2(「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장기 소년원 송치의 경우 그 수용상한기간은 2년임(같은 법 제33조제6항).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생략)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소년원예의 수용은 대상 소년에 대한 위탁·송치 및 유치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지며, 수용된 소년이 22세에 이르거나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하는 등의 경우 해당 소년을 퇴원(退院)시키게 됨(제43조).

제43조(퇴원)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항·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년원 교육과정 개발·편성에 관한 지원 요청

가.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

- 안 제29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생략) <u><신설></u>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

-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소년원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소년원학교의 유용성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육에 필요한 교원 등이 부족하여 소년원학교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법무부는 2024년 현재 10개의 소년원 중 4개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하여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소년원학교 설치 현황(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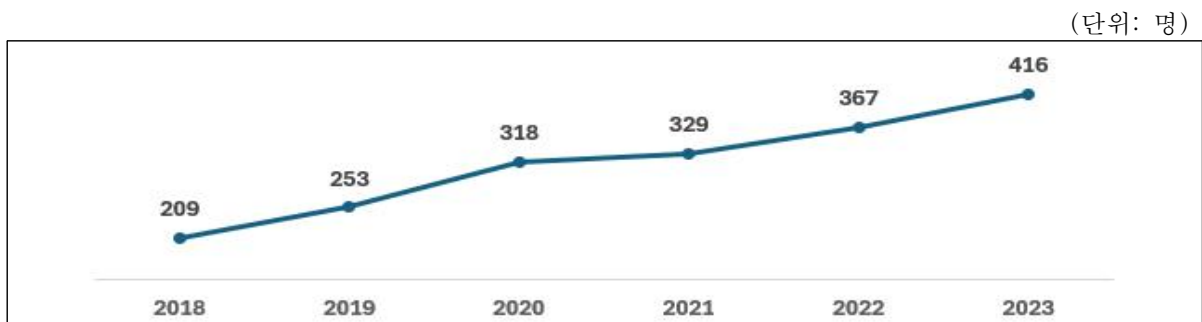
지역	기 관	개 교	지역	기 관	개 교
서울	고봉중·고등학교	1990	전주	송천중·고등학교	1990
대구	읍내중·고등학교	1990(2021)	안양	정심여자중·고등학교	1990(2019)

주: 괄호 안은 재개교 연도

소년원 등 소년 대상 보호시설에서의 교과교육은 단순히 대상자의 학업 성취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예방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²⁾ 따라서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 실시는 대상 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소년을 사회화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에 따라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년원학교에서 교과교육을 이수하는 소년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8-2023년 동안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 수료 인원은 2018년 209명에서 2023년 416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음.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수료 인원(2018-2023) >



2) M.W. Lipsey, J.C. Howell, M.R. Kelly, G. Chapman, and D. Carve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Juvenile Justice Programs, Center for Juvenile Justice Reform at Georgetown University (2010) 참조, 강태경·유진,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13에서 재인용.

그러나 소년원학교의 특수성과 가변적인 수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교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움.

- 2024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각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3~5명으로 다양한 교과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수준임.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담당 교원 인원(2024) >

구 분	고봉	읍내	송천	정심여자
교원(명)	5	3	4	4

- 안 제29조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체계화를 통한 교과교육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9조의 심사에는 초·중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와 각 지방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점(「초·중등교육법」 제23조)을 감안하여, 교육감에 대한 지원 요청도 포함할 필요는 없는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관계기관의 의견

- 안 제29조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소년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육부와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고 다만 소년원 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사 파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협조도 필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2